(재)경남테크노파크 공고 2026-107호

2026년 「비제조산업 점프업 기업 지원사업」 지원 공고

도내 비제조분야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유망 기업의 상위 단계 도약(Jump-up)을 위한 단계별 맞춤형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4월 13일

(재)경남테크노파크 원장

1 지원개요

○ **(지원목적)**

- 단계별 비제조기업 성장지원체계를 확립하여 점프업 기업지원으로 성장 견인
- 기술개발의 사업화 연계 및 시장 진출을 위한 맞춤형 마케팅 지원 확대

○ **(지원자격)**

- 본사 또는 주사업장 경남도내 소재
- 국세청 “주업종 코드” 비제조*(ICT/SW, 콘텐츠, 디자인) 분야 해당
- 근로자 수 10명 이상, 3년 평균 매출액 10억 이상, 업력 3년 이상

○ **(지원규모)** 6개사 / 40백만원 내외(기업부담금 10% 이상)

- 기업별 지원 규모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

○ **(지원기간)** ‘26. 5월 ~ 10월(5개월 내외)

○ **(지원내용)** 기술개발 지원 및 개발 완료 아이템에 관한 마케팅 지원

구분		지원내용	지원금
기술개발지원	디자인	• 자체 디자인 상품 개발 및 고도화 지원 - 워킹, 디자인 목업 등 샘플제작 지원 - 소모품 성격의 재료 또는 원료를 구입하는 비용	40백만원 내외
	ICT	• SW/제품 제작 지원 - 회로/PCB설계, 목업 제작 등 SW/제품 초기 상용화를 위한 외주용역비 등 • 제품고도화 지원 - SW/제품 품질 개선, 업그레이드, 앱개발 등 외주용역비, 재료비 지원	
	콘텐츠	• 신규 콘텐츠 제작 • 기 보유한 콘텐츠의 성능 및 디자인, 스토리, 내용 등 품질 향상을 위한 지원	

		※ 콘텐츠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기 위한 일반용역비, 재료비 등으로 사용	
	기타	• 제조기업과의 콜라보 아이템(굿즈, 식음료 등) 개발, 기존 상품의 고급화 지원	
마케팅·투자		• 개발이 완료된 아이템의 홍보, IR 등 투자유치 지원	

2 신청자격

○ **(지원자격)** 공고일 전일* 기준 ① ~ ⑤ 모두 충족

*** 공고일 전일 : 2026. 4. 12.**

구 분	세부기준	비고
① 소 재 지	본사 또는 주사업장 경남도내 소재	개인/법인
② 업 종	주업종 코드*가 비제조(ICT/SW, 콘텐츠 디자인)** 분야인 경우	주업종 코드 확인서(홈택스 출력물)
③ 고 용	근로자 수 10명 이상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④ 매 출	3년 평균 매출액 10억 이상	재무자료(재무제표 등)
⑤ 업 력	업력 3년 이상	사업자등록증

*** 주업종 기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4조제1항)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업종으로 표시

- 주업종코드 확인서 발급: 홈택스 접속 ⇒ 사업자등록사항 및 담당자 안내 ⇒ 화면 마우스 우 클릭 후 인쇄하기 ⇒ 인쇄된 출력물에 신청기업 명판 및 직인 날인 후 스캔본 제출

**** 비제조산업 기준:** 표준산업분류코드(KSIC)상 제조업(C코드) 외 업종 중 **정보서비스업(J58~63),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70~73),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90) *R91제외**

- (붙임3) 국세청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 연계표"로 확인

3 평가내용

○ **(평가단계)** 요건검토→ 서면평가*(필요시) → 현장점검 → 발표평가

* 신청기업 수가 지원기업 수의 4배수 이상일 경우, 사전 서면평가를 통해 3배수를 선정(고득점순)하여 현장점검 및 발표평가 진행

- 요건검토: 지원자격 충족 여부 검토
- 서면평가: 신청기업의 기본역량(정량) 및 아이템의 차별성, 지원의 시급성, 지역경제 효과성(정성)에 대한 서면평가

<서면평가 항목>

구분	제출서류	평가항목	배점
정량평가 (30점)	재무제표	**(성장성)** 매출액 증가율: '23년 대비 '24년 매출액 증가율	5점
		(수익성) '24년 매출액영업이익률: 영업이익 / 매출액 × 100%	5점
		(안정성) '24년 부채비율: 부채총액 / 자본총액 × 100%	5점
	고용보험 가입자명부	**(근로자수 증가율)** ('25.12월말 고용보험가입자수 - '24.12월말 고용보험가입자수) / '24.12월말 고용보험가입자수 × 100	15점
정성평가 (70점)	사업신청서	**(사업 아이템의 차별성과 성장가능성)** 홍보를 추진하고자 하는 아이템이 기존 시장에서 차별성을 가지며, 사업성과 성장가능성이 있는지 평가	30점
		(지원 필요성 및 시급성) 사업추진이 시급하고, 지원이 필요한지 평가	30점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기여도) 청년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여 가능성 평가	10점

※ 2024년 이후 설립기업 및 간편장부 대상자 정량평가(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산출 어려움을 고려하여 최소점수인 5점 부여

- 현장점검: 사업신청서 및 내용의 사실 여부 등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
- 발표평가: 기업에서 제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발표 및 질의응답

<발표평가 항목>

사업신청서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
Ⅱ. 사업계획	성장가능성	• 사업수행을 위한 기업역량 • 매출·고용 및 재무 안정성 • 시장 경쟁력 및 성장가능성 • 기업성장전략 및 지원사업 연계성	10점
	실현 가능성	• 추진 프로세스의 적합성 및 단계별 실행 구체성 • 단계별 실행계획과 연계된 추진전략의 차별성 • 주체별 역할분담 및 전문성 • 일정 수립의 구체성 및 실행가능성 • 예상되는 사업 리스크 식별 및 대응 전략의 현실성 • 성과목표 및 검증방법의 명확성	20점
	지원내용의 타당성	• 지원과제의 타당성 및 시급성 • 기존 대비 차별성 및 기술적 우위 • 목표시장 분석 및 사업수행의 타당성 • 지원을 통한 성과 창출 가능성	20점
	수행과정의 적정성	• 예산편성 산출근거 및 일정수립의 적절성 • 인력·외부전문가·용역 활용계획의 적정성 • 사업관리 및 성과점검 체계의 체계성	20점
Ⅲ. 기대효과	사업 효과성	• 지원사업을 통한 성장 가능성(사업화 가능성) • 매출 증대 및 시장 확대 가능성 • 신규 고용 창출 및 경제 활성화 효과 • 사업 종료 후 성과 지속·확산 가능성	30점
합계			**100점**

<우대가점>

제출서류	평가항목	배점
가점 증빙자료	이노비즈(1점), 벤처기업(1점), 창업기업(1점), 여성기업(1점) 최근 3년 내 정부·지자체 주관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1점)	최대5점

4 추진일정

모집공고	⇨	요건검토	⇨	서면평가(필요시)	⇨	현장점검
경남도, 경남TP		경남TP		평가위원회		경남TP
'26. 4. 13. ~ 24.		~ '26. 4. 28.		'26. 4. 30.		'26. 5. 6. ~ 7.

발표평가	⇨	협약 체결	⇨	사업수행	⇨	최종평가
평가위원회		경남TP↔수혜기업		기술개발 및 마케팅 지원		수혜기업
'26. 5. 13.		'26. 5월 중		~ '26. 10월		'26. 11월 초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 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5 신청방법

○ (공고기간) 2026. 4. 13.(월) ~ 2026. 4. 24.(금)

○ (접수기간) 2026. 4. 13.(월) ~ 2026. 4. 24.(금), 18:00까지

- (재)경남테크노파크 누리집 회원가입 후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 www.gntp.or.kr > 지원사업 > 사업신청 > 해당 공고 선택 >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제출서류 목록		제출부수
필수①	[서식 1] 사업 신청서	1부
필수②	[서식 2]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필수③	[서식 3] 정부지원사업 수혜이력 상세확인서	1부
필수④	[서식 4]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
필수⑤	[서식 5] 선정평가 우대가점 신청확인서(해당시)	1부
필수⑥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필요시)	1부
필수⑦	**주업종코드 확인서**	1부
필수⑧	<고용자료>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 '24년 12월 말 기준 1부, '25년 12월 말 기준 1부 - 공고일 전일(2026. 4. 12.) 기준 1부	총 3부
필수⑨	<재무자료> - '23~24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본) - '25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	각 1부
필수⑩	<예산수립 증빙자료>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1부
선택⑪	<기업현황 자료> 우대가점 증빙 및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등	각 1부

○ (문 의 처) 김정효 연구원(☏ 055-259-3636, kjh9279@gntp.or.kr)

6 유의사항 및 지원제외 대상

□ 유의사항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지원 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 접수된 서류는 신청 기간 이후 신청기업 요청에 따라 임의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음

○ 제출된 서류가 허위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취소 및 협약해지 될 수 있음

○ 부가세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기업이 부담하여야 하며, 지원금액과 기업 부담금을 합한 총사업비는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임

○ **정부 및 유관기관과 동일 또는 유사사업 중복지원 불가**

- 중복수급 등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 지원과제의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정부 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및 경남테크노파크 기업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름

□ 지원제외 대상

○ 제출기한 경과, 제출서류의 미비 또는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 지원 기간에 경상남도 이외 지역으로 본사 또는 사업장이 이전한 경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수관계인, 자회사 또는 계열사와 공급기관(업) 참여 불가(인적 · 물적 구분이 곤란한 기업 간 또는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간 포함)

○ 동일제품 또는 내용으로 정부 및 지방비 지원을 받거나 진행 중인 경우(중복지원)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여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기업의 부도,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처분,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부채비율 1,000% 이상 등)이 인정되는 경우 등

○ 사업에 참여하는 신청기업 및 대표자,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해당하는 경우

[붙임] 사업신청서

2026년 비제조산업 점프업 기업 지원사업 신청서

기 업 명		**사 업 자 번 호** (법인등록번호)	000-00-000 ()
대 표 자		**설 립 일 자**	
주 소	(본사)		☎ (Fax)
주업종 코드		**업 종** **(표준산업분류)**	
주 력 제 품 **(보유아이템)**			
과 제 명			

프로그램명		신청내용(신청항목에 ☑체크)	신청금액(원)	기업부담금(원)
기술개발지원	디자인	☐ 자체 디자인 상품 개발 및 고도화 지원		
	ICT	☐ SW/제품 제작 지원 및 제품고도화 지원		
	콘텐츠	☐ 신규 콘텐츠 제작 및 고도화 지원		
	기타	☐ 제조기업과의 콜라보 아이템 개발		
마케팅·투자		☐ 개발이 완료된 아이템 투자유치 지원		
합계			**0**	**0**

총괄책임자	성명		직위	
	소속부서		내선전화	
	e-mail		휴대전화	
실무책임자	성명		직위	
	소속부서		내선전화	
	e-mail		휴대전화	

상기 신청인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면서 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필요시 정보 조회를 동의하며, 기재된 내용에 대해 허위 작성 시 이에 대한 책임은 동 기업에 있음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기업명 : 대표 : (인감)

(재)경남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 사업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

- 신청서에 기재한 매출액 등 정량적 수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평가에서 배제되거나 선정된 이후에도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신청서 제출 시 '작성요령' 은 삭제할 것
- 각 항목별 작성 요령을 참고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보 기재
- 파란색으로 기재된 부분은 예시 내용이므로, 글자색을 검은색으로 변경한 후 제출

※ <사업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해당 페이지 삭제 후 제출

I. 기업 및 사업현황

1. 기업현황(2페이지 이내)

1.1. 기업개요

기 업 명		사 업 자 번 호	
주 업 종 코 드		업 종 (표준산업분류)	
주 력 제 품			
기 업 연 혁	○ 1984 : 신규 설립 ○ 1999.12 :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 2000.01.06 : 유망 수출기업 인증 획득 ○ 2000.01.06 : 상호 변경 "ABC" ○ 2003.01.02 : 홍길동 대표, 가장 존경 받는 기업인상 수상 (한국경영인협회) ○ 2014.05.12 : 글로벌강소기업 선정(중기청)		

1.2 지식재산권(특허, 디자인, 실용신안) 출원/등록 실적

지재권명	등록(출원)연도	등록(출원)국가	등록(출원)번호

1.3 각종 인증, 지정, 포상 등(최근 3년 내)

구 분	내 용
인증획득	○ ~~인증('23.00.00)
각종 포상 및 수상	○ ~~장관 표창('23.00.00)
기 타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21.00.00)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22.00.00) ○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20.00.00) ○ 저작권 등록('24.00.00)

2. 기업역량

2.1. 기업규모

연 도	2023년	2024년	2025년	연평균성장률 (CAGR,%)
매출액(원)				
영업이익(원)				
부채비율(%)				
상시근로자수(명)				

* 연평균증가율(CAGR) : {(2025년도 OOO/2023년도 OOO)^(1/2) - 1} × 100
* 2025년 매출액, 영업이익, 부채비율은 예상수치 기재
* 상시근로자수: 연도말 기준 고용보험가입자수 기재

2.2. 주요 사업영역

❍
-
-

작성 요령	※ 작성 요령은 삭제 후 제출

○ 기업의 핵심 사업 및 제품(서비스) 소개: 이미지 제시
 - 타겟 시장(국내/해외) 및 고객 유형(B2B/B2C 등) 포함
○ 기업의 보유역량(전문성, 수행실적 등)
 - 핵심 경쟁력 및 차별성 강조(특허, 독자 기술, 콘텐츠 IP, 디자인 역량 등)
 - 최근 수행한 주요 프로젝트(연도, 주요 고객, 프로젝트 내용 포함) 기재
○ 향후 성장 목표 및 비전

2.3 주력 사업(제품) 현황

작성 요령	※ 작성요령은 삭제 후 제출

○ 현재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주력 제품(사업)에 대한 소개(시장 영향력, 핵심기술, 용도, 주기능 등)
○ 최근 3년간 주력제품 변화속도와 수익성 분석을 통해 주력제품 변화 속도 전망

❍

-

-

< 최근 3년간 주력제품 변화 >

연 도	2023년	2024년	2025년
매출 1위	○제품(%)	○제품(%)	○제품(%)
매출 2위	○제품(%)	○제품(%)	○제품(%)
매출 3위	○제품(%)	○제품(%)	○제품(%)

*()는 매출액 대비 해당 제품의 매출비중

2.4 핵심기술 보유현황

작성 요령	※ 작성요령은 삭제 후 제출

○ 현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핵심기술의 현황을 '기본 개념도', '그림' 또는 '사진' 등으로 서술

❍

-

-

< 최근3년 국내·외 특허 출원·등록 현황 >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계
국내출원(건)					
국내등록(건)					
해외출원(건)	미국				
	일본 등 아시아				
	유럽(EU)				
	기타				
해외등록(건)	미국				
	일본 등 아시아				
	유럽(EU)				
	기타				

Ⅱ. 사업계획

과 제 명	

1. 사업 추진배경 및 필요성

❍

-

-

작성 요령	※ 작성 요령은 삭제 후 제출

○ 기업이 보유한 여러 아이템 중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도약하고자 하는 아이템(제품, 서비스, 솔루션, 콘텐츠 등)에 대해 설명
- 아이템의 주요 기능, 용도, 적용 분야 등을 포함하여 작성
- 목표 시장(국내/해외) 분석, 경쟁사 분석, 타겟고객, 수익모델
- **기존 제품과의 차별점**, 기술적 우위, 시장 내 경쟁력(독창성, 기술력, 차별성 등) 강조

2. 성과지표 및 사업 내용

2.1 성과지표

성과지표	지표 정의	단위	최종 목표치	검증방법	증빙자료
핵심 서비스 기능 구현	개발 예정 핵심 기능 구현 수준	개	5	기능 테스트 및 외부 검증 수행	테스트 결과 보고서
콘텐츠 제작	신규 제작 콘텐츠 수	건	10	콘텐츠 제작 완료 여부 확인	결과물 파일
디자인 개선	제품/서비스 디자인 개선 결과	건	3	디자인 시안 및 결과물 비교 검토	디자인 시안
사용자 만족도	서비스 이용 고객 만족도	점	4.0 이상	사용자 만족도 조사 실시	설문조사 결과
사업화 성과	신규 고객 확보 또는 투자 유치	건	3	계약 또는 상담 기록 확인	계약서 등

작성 요령 ※ 작성 요령은 삭제 후 제출

[2.1 성과지표] **당해연도에 추진할 구체적인 정량목표 제시**

○ **성과를 측정하는 방법 제시 필요**(예, 공인시험성적서,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등) ○ **성과지표 설정**

- 본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3~5개 내외로 설정**
- 성과지표는 기능 개발, 콘텐츠 제작, 디자인 개선, 서비스 출시, 사용자 확보, 투자유치 등 **사업 특성에 맞는 지표로 설정**
- 단순히 "개발 1건"과 같이 포괄적인 목표가 아니라 **측정 가능한 지표 형태로 작성**
- (예시) 신규 콘텐츠 제작, 핵심 기능 구현, 디자인 개선, 사용자 확보, 투자유치 활동

○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로 **사업 수행 기간 내 달성 가능한 정량적 목표치 제시**
- 목표치는 건수, 기능 수, 만족도 점수, 사용자 수 등 **수치화 가능한 형태로 작성**
- (예시) 콘텐츠 제작 10건, 핵심 기능 5개 구현, 디자인 시안 3종 개발, 사용자 만족도 4.0점 이상

○ **성과 검증방법 작성**

- 설정한 성과지표가 **어떤 방법으로 측정·검증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작성**
- 내부 평가, 사용자 조사, 시스템 테스트 등 **객관적인 검증 방법 제시**
- (예시) 기능 테스트 수행 및 결과 확인, 사용자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서비스 운영 데이터 분석

※ 성과 검증은 기업 자체 평가가 아닌 **외부기관 시험·인증, 사용자 조사, 계약·매출 발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한 방식으로 제시**

○ **증빙자료 제시**

- 사업 종료 시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명확히 제시**
- (예시) 콘텐츠 결과물, 서비스 화면 및 테스트 결과, 설문조사 결과, 계약서 또는 협약서

2.2 사업 내용

○ 기술개발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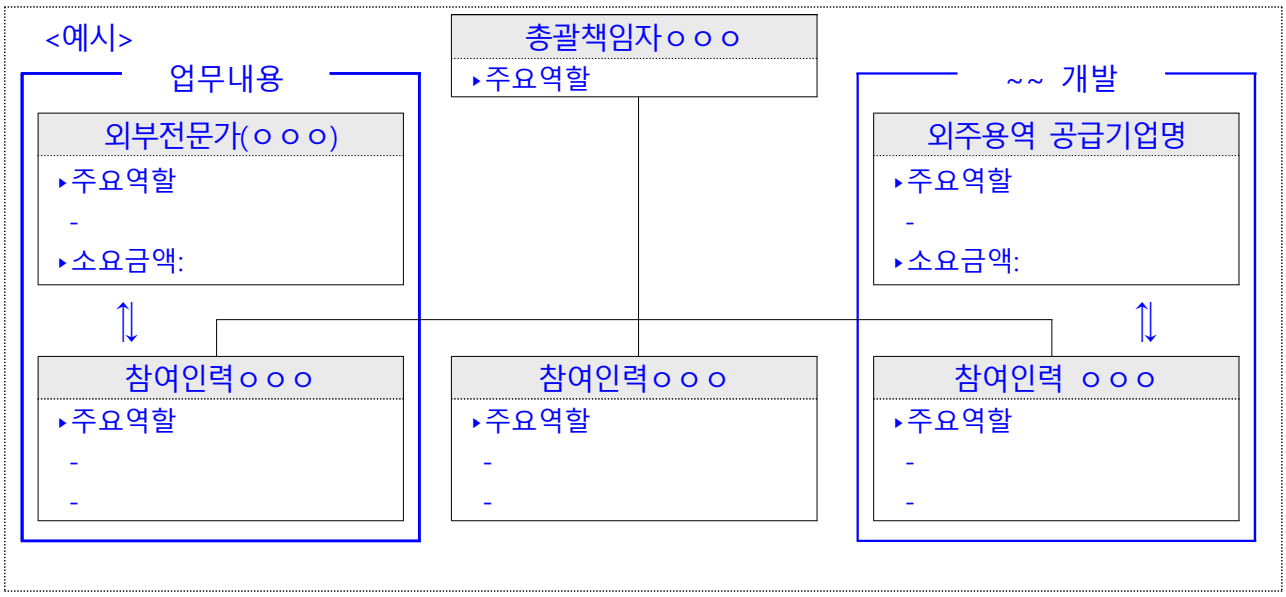
-
-
-
-
-

○ 추진 프로세스

○ 추진전략

-
-

○ 추진체계



- 참여인력 현황 및 수행역할

구분	성명(직위)	담당업무
기존	ㅇㅇㅇ (팀장)	• 사업 참여기간: • 과제 역할: 총괄책임자 • 수행업무 내용 상세히 기재 - • -
신규	ㅇㅇㅇ (사원)	• 사업 참여기간: • 과제 역할: 실무담당자 • 수행업무 내용 상세히 기재 - • -

- 외주용역 공급기업의 역할 ※외주용역비 예산 편성시 작성, 해당없는 경우 삭제

공급기업명	과업범위(역할)
	• 사업 참여기간: • 소요예산: • 과제 역할: 수행업무 내용 상세히 기재 - -

- 전문가 활용계획 ※전문가활용비 예산 편성시 작성, 해당없는 경우 삭제

전문가명	전문가 활용 내용
ㅇㅇㅇ	• 사업 참여기간: • 소요예산: • 과제 역할: 수행업무 내용 상세히 기재 - -

❍ 추진일정

사업추진 내용	소요예산 (천원)	추 진 일 정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3주	4주						
사업협약									
~~ 재료 구입 및 테스트	5,000			구입				테스트	
~ 디자인 개발	10,000			계약체결		완료보고			
소프트웨어 임차									
결과보고서 제출									10.31.

2.3 리스크 관리 방안

❍

-

작성 요령 ※ 작성 요령은 삭제 후 제출

※ [참고1] 사업비 집행기준 내용 참고하여 작성

[2.2 사업내용]

◦ 추진 프로세스: **사업 전 과정에 대한 업무 프로세스를 도표, 서식 등을 활용하여 도식적으로 표현**

- 분야별 프로세스 및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도 병행 기재

◦ 추진전략: 지식재산권 확보, 전문가 활용, 연구개발서비스 활용, 다른 기업과의 협력 등 **과제목표 달성을 위한 차별화된 전략 및 방법 기재**

◦ 추진체계: 점프업기업 내부 인력의 전문 역량과 외부 전문가, 외주용역 공급기업 간의 역할 분담 내용을 이미지나 표로 시각화하고, **각 주체가 목표 달성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구체적인 역할과 책임을 상세히 기술**

◦ 추진일정: 사업 수행기간 내(협약일~ '26.10.31.) 정량적 목표를 달성해야 하며, 사업 수행 성공 여부에 대한 평가가 예정되어 있음

- 협약체결 예상일은 4월 13일 이후로 예상되므로, **4월 3주 이후 일정부터 수립** 요망

◦ [2.3 리스크 관리방안]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수 있는 위험요소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사전에 예방할수 있는 방안과 발생시 대응 계획에 대해 제시**

3. 사업비

3.1 사업비 총괄내역

(단위 : 원, 부가세 별도)

총 사업비	지 원 금	기업부담금 (지원금의 10% 이상)
45,400,000	40,000,000	5,400,000

3.2 사업비 소요명세

(단위 : 천원, 부가세 별도)

비목	사업비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지원금	기업부담금	합계	지원금 비율	
연구인력 인건비	10,000	1,000	11,000	25%	▸ 기존 참여인력 1명 = 000원 ▸ 신규 참여인력 2명 = 000원
재료비			0		▸ 미편성 비목은 삭제
외주용역비	10,000	2,000	12,000	25%	▸
전문가활용비	1,000	400	1,400	3%	▸ 외부전문가 자문 - (책임급) 120천원×5시간=600천원 - (선임급) 100천원×8시간=800천원
소프트웨어 활용비	4,000	1,000	5,000	10%	▸
지식재산창출 활동비	5,000	0	5,000	13%	▸
교육훈련비			0		▸ 미편성 비목은 삭제
연구개발 서비스활용비	10,000	1,000	11,000	25%	▸
합 계	**40,000**	**5,400**	**45,400**	**100%**	

○ 참여인력 현황

구분	성명	직위	기본급(원)	참여기간(개월)	참여율(%)	인건비(원)
기존						
신규						
신규						
합계						

3.3 사업추진 내용별 예산편성 현황

사업추진내용	내 역	투입예산(원)	비고
~~ 개발	▸참여인력 인건비: 명 × 개월 ×		
	▸개발 위탁용역비: 원		
~~ 전문가 자문	▸참여인력 인건비: 원		
	▸전문가 자문료: 원		
합 계		0	

작성 요령 ※ 작성 요령은 삭제 후 제출

※ [참고1] 사업비 집행기준 참고하여 작성

○ 예산편성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로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제출
- 견적서에는 반드시 산출내역과 공급기업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 비교견적 미제출 사유 별도 기재

○ 연구수당, 출장비, 사무용품(기타 제잡비) 및 비품구입비, 회의비, 관리비, 이윤 등 간접비성 비용은 지원금으로 책정 불가

○ 자산성 물품구입, 범용성SW 구매 불가

○ 사후환급이 가능한 부가세 및 관세 등 지원 불가

○ **협약 변경은 가급적 최소화될 수 있도록, 초기 계획 단계부터 면밀하고 체계적인 예산 편성 필요**

Ⅲ. 기대효과

1. 정성적 기대효과

❍

-

-

2. 정량적 기대효과

❍

-

-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매출(원)	**합계(A+B)**				
	매출액(내수,A)				
	수출액(B)				
고용(명)	**총 고용인원**(C+D)		**12**		
	기존인력(C)		10	12	
	신규고용(D)	청년*	2		
		청년외	0		

*청년: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2022.12.29.)에 의거 19세 이상 39세 이하

❍ 기타성과 ※ 아래 표 내용은 예시이며, 해당사항 없는 경우 반드시 삭제 후 제출

구분	세부내용	정량적 성과
바이어 미팅 건수	베트남 바이어 발굴	15건
계약체결	기업 현지방문 및 계약 체결	1건 / 300,000$
CE인증	화장품 기기 인증	1건

작성 요령 ※ 작성 요령은 삭제 후 제출

◦ 정성적 기대효과(사업 추진을 통해 기대되는 비계량적 효과 서술)
- 사업 수행을 통해 기대되는 수치로 직접 표현하기 어려운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작성
- **기업 내부적인 측면**(예, 내부역량 강화 및 업무효율성 향상 등), **시장 및 고객 측면(**예. 고객 신뢰도 제고 및 장기 파트너십 형성 등), **사회적·경제적 측면**(예, 경제활성화 및 사회적 가치 창출 등) 으로 나누어 정성적 효과 기재

◦ 정량적 기대효과(사업을 통해 기대되는 성과를 구체적인 수치로 기재)
- 지원사업을 통해 발생 예상되는 매출 및 고용창출 목표를 구체적으로 작성
- **기업 내부적인 측면**(예, 매출증가, 생산성 향상 등), **시장 및 고객 측면(**예. 시장 점유율 확대, 신규고객 확보 등), **사회적·경제적 측면**(예, 일자리 창출, 산업 경쟁력 강화 등)으로 나누어 정량적 효과 기재
- 본 사업을 통해 기대되는 추가적인 성과가 있다면 정량적으로 서술

3. 최종성과물 활용계획

❍

-

-

작성 요령	※ 작성 요령은 삭제 후 제출

◦ 사업을 통해 창출한 성과물이 단순히 기술 개발에 그치지 않고, 실제 수익 창출이 가능한 사업 모델로 전환될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상세히 작성

◦ 과제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성과가 창출될 수 있는 사업화 전략 제시

- 기술개발 지원의 결과물을 기반으로, 시장 진출과 확장, 운영 및 생산 체계 구축, 외부 협력 및 추가 투자 유치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결과물이 실제 수익 모델로 연결되는 로드맵 제시

[서식 2]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신청기업 대표 및 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사업명	2026년 비제조산업 점프업 기업 지원사업				
성명	직위	본 과제에서 역할	전화번호	이메일	개인정보 이용 동의(자필서명)
이길동	대표	-	010-000-000	@	
홍길동	과장	총괄책임자	010-000-000	@	
김길동	대리	실무자	010-000-000	@	

위의 과제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사업내용 및 수행기관 간 상호 신뢰를 통한 수행에 동의하며, 본 과제가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관련 법령의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본 과제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의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목적

①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지를 비롯하여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용 조회, 기타 사전 지원제외 대상 여부의 확인
② 과제 선정, 보고서 제출 등 과제의 선정·평가 및 관리
③ 과제참여자의 사업비 사용 및 기업지원과제 수행의 적법·적정성 평가를 위한 관리
④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사후관리

2. 수집하는 기업정보 및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 기재내용(기업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기업설립일, 주력제품, 총괄 및 실무담당자의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 이메일, 매출액(영업이익, 부채비율), 근로자수,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정보 등)

3. 본인은 (재)경남테크노파크에 개인정보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1항의 사용목적이 종료되는 때까지 보유하는 데 동의하며, 관련 법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유관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4.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과제 심사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5. 위의 과제가 선정될 경우 관련 규정 및 법령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00월 00일

기 업 명 : 대 표 자 : (인)

(재)경남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서식 3] 정부지원사업 수혜이력 상세확인서

「비제조산업 점프업 기업 지원사업」

정부지원사업 수혜이력 상세확인서

1) 최근 3년 내 기업지원 수혜이력

신청기업이 정부, 지자체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이력 "전부" 기재

연번	지원연도	소관부처 (전담기관)	사업명	지원 프로그램	과제명	제품명 (서비스명)	지원금액 (천원)
1	2023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시장대응형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000기술을 활용한 000개발	000제품	50,000
2							
3							
4							
5							
6							
7							
8							

수혜기업 선정 과정에서 지원 중복성 검토를 위해 상기 내용을 제공하며, 본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인(기관)이 서명날인한 확인서의 복사본은 심사·평가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6년 00월 00일

기 업 명 :

대 표 자 : (인)

(재)경남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서식 4]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사업명	2026년 비제조산업 점프업 기업 지원사업

검토내용	해당	비해당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 및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회수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지 여부(경남TP입주기업 임대료 및 관리비 미납여부)		
■ 참여제한 여부		
▸ 신청기업, 신청기업의 대표자 또는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지역산업육성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 과제의 중복성		
▸ **지원신청 내용에 대해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거나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 채무 불이행 및 부실 위험 여부		
▸ 기업의 부도		
▸ 신청마감일 현재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신청마감일 현재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신청마감일 현재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단,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 및 투자기관의 대출형 투자유치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평가위원단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 국비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기업,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는 예외)		
▸ 신청마감일 현재 외부 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연도 결산 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상태인 경우		

본 확인서의 작성자는 필요한 정보를 직접 확인하고, 위 각 항목을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본 확인서 기재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어떠한 불이익을 감수할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기업)이 서명날인한 확인서의 복사본은 심사·평가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6년 00월 00일

기 업 명 :

대 표 자 : (인)

(재)경남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서식 5] 선정평가 우대가점 신청확인서

선정평가 우대가점 신청확인서			
사업명	**2026년 비제조산업 마케팅 활동 지원사업**		
기업명		**사업자번호**	

우대 기준	배점	증빙서류	신청여부 (✔체크표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1**	벤처기업확인서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1**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 확인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창업기업	**+1**	창업기업확인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	**+1**	여성기업확인서	
정부·지자체 주관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최근 3년 내 '23.3.20.~'26.3.20.)	**+1**	표창장, 인증서 등	
합 계			

※ **(유의사항)** 가점에 해당하는 사항을 근거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우대 가점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음

※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가점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가점 부여(유효기간 내)

2026년 00월 00일

기 업 명 :

대 표 자 : (인)

(재)경남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참고1 사업비 집행기준

비목	용도 및 산정기준
연구인력 인건비	**<용도>** ■ **점프업 기술개발 과제에 참여하는 인력의 인건비** **<산정기준>** ■ 수혜기업에 소속된 참여인력이 해당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신규인력 필수)** - 사업 미참여 기존직원, 대표자 인건비 편성 불가 - 지원금 기준 최대 70%까지 편성 가능 - **과제 관리를 위한 행정지원인력은 인건비 지원 불가** ■ 사업기간 내 급여만 인정 ■ 당해연도 1월 이후 채용한 신규직원 편성 가능 ■ 산출근거: 기본급(원) × 참여기간(월) × 과제참여율(%) - 동일인이 다수의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율 합계는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급여는 기본급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허위/과대계상 시 불인정 - 기존 참여인력의 경우 전년도 대비 일정 수준 이상의 보수 책정 불가(직전 1년 급여 대비 20% 이상 증액 불가) - 4대보험 사업자부담금, 각종 수당·상여금·휴가비 등 복리후생비 편성 불가 ■ **연구인력 인건비 편성 시, 개발 과제별 연구노트 작성 필수必**
재료비	**<용도>** ■ 기술개발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비용 **<산정기준>** ■ **과도한 재료비 구입 불가(개발에 필요한 비용만 구입)** ■ 공구 등 자산성 비품 등 구입 불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수관계인, 자회사 또는 계열사와의 거래 불가(인적·물적 구분이 곤란한 기업 간 또는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간 포함) ■ 지원금 기준 최대 25%까지 편성 가능
외주 용역비	**<용도>** ■ 전문성이 필요한 용역 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산정기준>** ■ 지원사업 수행의 일부를 외부기업(수탁기업)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 위탁용역 실행 시 과업과 용역사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업종의 연관성 부재 시 집행 불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수관계인, 자회사 또는 계열사와의 거래 불가(인적·물적 구분이 곤란한 기업 간 또는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간 포함) ■ 위탁용역 재하청 불가 ■ 지원금 기준 최대 25%까지 편성 가능

비목	용도 및 산정기준
전문가 활용비	**<용도>** ■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산정기준>** ■ 재단 내부 규정에 따른 "전문가 활용비 산출 기준" 준수 ■ 사업에 참여한 사업자 간 거래 및 대표자와 혈연 관계 또는 내부직원 전문가 활용 불가
소프트웨어 활용비	**<용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임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의 이용료 **<산정기준>**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임차 비용(과제와 상관없는 소프트웨어 임차의 경우 불인정) ■ 사업기간 내에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산정 ■ 사무용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불가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용도>** ■ 기술·특허·표준 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출원확보) 활동에 필요한 비용 **<산정기준>** ■ 기술개발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등록·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지원 불가, 관납료 및 우선심사 비용 지원 불가
교육 훈련비	**<용도>** ■ 참여인력의 교육·훈련 비용 **<산정기준>** ■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무관한 능력개발(어학, 자격증)을 위한 교육훈련비 불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고용보험법」에 의거한 고용보험환급과정 교육훈련비 중 고용보험으로부터 환급가능한 교육비 금액(환급 가능하지만 연구개발기관 사정으로 환급 신청하지 못한 금액 포함) 지원 불가 ■ 대학 등을 통한 학위과정, 석·박사과정 논문 지도비 등 불가 ■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관련 없는 회의·학회·세미나 참가비 불가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	**<용도>** ■ 기술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시험·분석·검사, 안전점검·검사비, 임상시험, 소프트웨어 품질검증 등 **<산정기준>** ■ 외부 공인기관에 한해 기준단가 또는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홍보비	**<용도>** **■ 개발완료한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홍보활동비** **<산정기준>** ■ 홍보 활동의 목적, 대상, 범위가 명확해야 하며, 지원 대상 기술개발 아이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야 함 ■ 홍보비 항목 예시 - 홍보 영상 및 홍보물 제작, 전시회 참가비, 부스임차료 등 기타 마케팅 활동 ■ 지원금 기준 최대 25%까지 편성 가능

참고2 전문가 활용비 산출 기준

❑ 전문가 활용비 지급 기준

구 분	지급기준		지급액	비고
전문가 활용비 (컨설팅, 기술지도 등)	1급	책임급이상	120,000원 이내/시간	■ 최대 4시간 이하/일 ■ 최대 8시간 이하/휴일·공휴일 ■ 자문 결과물 첨부
	2급	선임급	100,000원 이내/시간	
	3급	원급 이하	80,000원 이내/시간	

❑ 전문가 자격 기준

구분	책임급	선임급	원급
대학	부교수 이상	전임강사 이상	대학원 박사과정 이상
국.공립 연구기관	4급 이상 직원	5급 이상 직원	6급 이하 9급 이상 직원
정부출연 연구기관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 직급		
기업체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 후 10년 이상의 연구경력 소유자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 후 5년 이상의 연구경력 소유자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 후 1년 이상 근무한 경력 소유자
	•석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의 연구경력 소유자	•석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의 연구경력 소유자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연구경력 소유자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고교졸업 후 동일 기술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 소유자
	•고교졸업 후 동일 기술분야에서 17년 이상 근무한 경력 소유자	•고교졸업 후 동일 기술분야에서 12년 이상 근무한 경력 소유자	
전문직분야	해당분야 3년 이상 경력자	해당분야 2년 이상 경력자	해당분야 1년 이상 경력자